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3일, 윤준병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2.1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4.)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준병 의원)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는 원산지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자에게 시정명령이나 거래행위금지 처분과 함께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민이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과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입점한 음식점체가 배달하는 음식에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음식점체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 같은 배달앱은 통신판매중개업체로서 입점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의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이에 입점업체(통신판매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원산지 표시제도를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상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최용훈 수석전문위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현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를 통해 개정안에 따른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고지와 유사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즉, 통신판매중개업자는 2022년부터 동 협의체를 통하여 통신판매 원산지 관리 추진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논의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고지 의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를 법제화한 측면이 있음.

다만, 현행 자율적 운영과 달리 현 제도를 의무화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유무의 차이가 있음.

한편, 쿠팡 등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을 살펴보면, 원산지 표시 위반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측면이 있음.

먼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쉽게 고지해야 함. 이러한 내용을 고지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여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다음으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제4호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위반 행위를 공표함. 이 때 공표하여야 하는 사항에는 중개를 의뢰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수단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법적 구조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원산지 위반 행위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책임을 부과받는 것으로 보임.

한편,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현행법은 홈쇼핑업체 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판매중개의뢰자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현행법 제6조제5항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하는 자가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를 부여받고 있음.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방송채널을 통하여,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농수산물 등의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음.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방송채널사

용사업자와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하지 않도록 고지 의무 등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자율관리 협의체’ 활동을 통하여 '22년부터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처럼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 고지를 의무화하되, 과태료를 미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준병)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